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10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5.

발 의 자 : 이정문 · 이연희 · 이학영
박홍배 · 김병기 · 조승래
이개호 · 윤준병 · 서영석
문금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에는 「아동복지법」, 「노인복지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 등 여러 개별법에 따른 보호·선도·복지에 관한 사업, 사회복지상담·의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·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포함됨.

그런데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및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급식 위생·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은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, 동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·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고목 및 노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고목을 도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고목 및 노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고.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

노.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사회복지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·선도(善導)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, 직업지원, 무료 숙박, 지역사회복지, 의료복지, 재가복지(在家福祉), 사회복지관 운영,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</p> <p>가. ~ 허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고. (생략)</p> <p>2. ~ 7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허. (현행과 같음)</p> <p>고. 「<u>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</u>」</p> <p>노. 「<u>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</p> <p>도. (현행 고목과 같음)</p> 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